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15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5일

## 2. 제안이유

- 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시설로 아동복지 서비스 개선 및 현행법령을 준수하고자 시설 분리하여 초록꿈터(남아 양육시설) 위탁을 위해,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꿈나무마을 초록꿈터(남자아동 양육시설) 운영·관리

- 위탁기간 : 4년 (2016.1.1.~ 2019.12.31)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소요예산(안) : 5,159백만원 내외(연간 시비 100%)

**나. 대상기관 : 1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외(응암동 42-5외)	- 대지 43,203.00㎡, - 건물면적 15,692.47㎡, - 지하1층/지상6층	◦ 초록꿈터(남자아동 양육) - 생활실, 세탁실, 조리실, 강당, 도티기념병원 및 기숙사, 펌프실, 수위실 등

**다. 주요 위탁사무**

- 보호대상 3세 이상 남자아동의 보호·양육·치료
- 보호대상 3세 이상 남자아동의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라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 가족담당관-11755(2015.6.29. 시립 꿈나무마을 시설 분리 계획)

**나. 예산조치 : 약 5,159백만원 (연간 시비 100%)**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 보호대상 3세 이상 남자 아동의 보호·양육·치료 및
  - 보호대상 3세 이상 남자 아동의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 위탁기간은 4년(2016. 1. 1 ~ 2019. 12. 31.)임.

### 나.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설분리 추진 근거 및 내용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은 시립으로 운영되는 아동 양육시설로서, 정원 850명 규모(2015년 10월 현재 현원 618명)의 대규모 시설로, 현재 위탁 운영자는 (재)마리아수녀회(위탁기간 2015. 1. 1~2019. 12. 31, 5년간)이며, 2015년 기준 시비 보조금은 126억원 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꿈나무마을 운영 현황〉

시설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아동양육시설)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응암동 42-5번지)
운영법인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주요기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양육
위탁운영기간	2015.1.1.~2019.12.31(최초 위탁일 : 1975.1.1.)

보호아동 현황

(2015. 5월 현재)

구 분	계	미취학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계	620	38	2	129	310	136	5
남	334	24	2	67	162	76	3
여	286	14	0	62	148	60	2

종사자 현황

○ 꿈나무마을

(2015. 6월 현재)

구분 (현원)	법 인 자부담 인 력	서울시 지원(명)							
		소계	원 장	사 무 국 장	임상심리 상담원	생 활 복지사	자립지원 전담요원	사무원	보육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기타	
236	13	223	1	1	1	20	3	2	161
			2	2	12	2	2	14	

○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2015. 1월말)

계	교 장	교 감	교 사	특수학급 교 사	교과전담 교 사	행정직	기 타
18	1	-	8	2	3	2	2

부동산 현황

- 부지현황 : 48,385.00㎡(14,662.12평)
- 건축물 현황 : 27,910.48㎡(8,457.72평)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계
국비	시비	구비					
878,227	12,633,814	4,494	900,000	935,121	1,112,966	32,300	16,496,922

세출예산(단위 : 천원)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외	계
10,882,726	1,009,672	4,576,324	0	8,000	20,200	16,496,922

- 금번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설 분리에 따라 분리된 각 시설 운영 사무 각각에 대하여 신규 위탁 절차를 밟고자 제출된 것임.
- 꿈나무마을 시설분리는 「사회복지법」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sup>2)</sup>에 따라,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아동의 복리 증진하고자,
- 현행의 600명 이상의 현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성별 및 기능별로 3개 시설로 분리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려는 것으로,
- 여기 시설 공간은 그동안 꿈나무마을 內 초등학교(알로이시오 초등학교)가 폐교 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는 것이며,
-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3개 시설(여자아동 시설-파란꿈터, 남자아동 시설-초록꿈터, 영·유아 전용시설-연두꿈터)로** 분리할 계획임.
- 참고로, 동 민간위탁의 경우 향후 ‘수의계약’ 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인데, 이는 현재의 위탁 운영자인 (재)마리아수녀회와 지난 2014년 12월에 5년간(2015. 1. 1 ~2019. 12. 31)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던바, 금번에 법령 준수를 위해 시설을 분리하여 신규

2)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하게 됨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sup>3)</sup>)의 따라 현 수탁자와 수의 계약하며, 위탁기간은 이전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인 4년으로 한 것임.

〈시설 분리 전·후 비교표〉

시설 분리 전

시설 현황		운영자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법 인 명	(재)마리아 수녀회
소 재 지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대 표 이 사	정영숙
대 지 면 적	48,367.00㎡	소 재 지	부산 서구 암남동 천해남로7
건 물 면 적	26,972.00㎡	법인설립일	1968.08.30
개 원 일	1975.1.1	수 탁 기 간	2015.1.1~2019.12.31
최초위탁일	1975.1.1		

시설 분리 후

시설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소 재 지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대 지 면 적	5,462㎡	43,203㎡	
층 별	지하1층/지상7층	지하1층/지상6층	지하1층/지상4층
건 물 면 적	8,586.17㎡	15,692.47㎡	3,671.84㎡
보 호 대 상	여자 아동(271명)	남자 아동(306명)	영·유아(39)

3)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요보호아동(3세 이상 남자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및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sup>4)</sup>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sup>5)</sup> 및 제6조 제1호<sup>6)</sup>에 따라 해당사

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무를 위탁하려는 근거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및 전문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는데,
  -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그들의 보호와 양육, 치료 및 일시보호 등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 이의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6)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